

## 서대문구-천연동 ‘책뜨레’(주민독서동아리)

# 『천연동 하늘샘 작은도서관』 운영 협약서

서대문구청장(이하 “구”라 한다)과 천연동 주민독서동아리 책뜨레(이하“책뜨레”라 한다)는 『천연동 하늘샘 작은도서관』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 본 협약은 『천연동 하늘샘 작은도서관』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에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(시설)

- ① 명 칭 : 천연동 하늘샘 작은도서관
- ② 위 치 :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독립문로 27, 천연보건분소 1층
- ③ 주요시설 : 작은도서관(165㎡), 커뮤니티 공간 등

제3조(담당업무) “구”와 “책뜨레”는 상호 존중과 신뢰로서 다음과 같이 담당업무를 정하여 상호 협력한다.

- ① “구”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1. 작은도서관 조성
  2. 정기적 도서 지원 및 상호대차서비스 지원
  3.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진흥프로그램 지원
  4. 자원활동가 등 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
  5. 내·외부 집기 및 도서관리프로그램 유지관리
- ② “책뜨레”의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다.
  1. 도서대출 및 반납을 통한 정보서비스 제공
  2. 작은도서관 운영 및 공간제공
  3. 자원활동가 등 도서관 운영인력 배치 및 관리
  4.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
  5. 작은도서관 내·외부 시설물 및 도서 관리
  6. 생활밀착형 독서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

제4조(운영원칙) ① “책뜨레”는 서대문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시행규칙에 준

하여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“책뜨레”는 보안서약서에 서명한 내용을 숙지하고 도서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며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도서관 이용자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 작은도서관 및 커뮤니티실에서 프로그램을 개설·운영할 때에는 사전에 “구”와 협의하여야 한다. 특히 수강료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“구”와 사전 협의 후 운영하여야 한다.

④ 작은도서관 및 커뮤니티실을 대관하고자 할 때는 “구”와 협의하여야 한다.

제5조(물품의 운영관리 등) ① “구”가 설치한 자료 및 물품의 소유권은 “구”에 있으며, “책뜨레”는 시설물 및 물품을 관리·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“책뜨레”는 운영기간이 종료될 때에는 “구”가 제공한 물품 등을 “구”에 인계하여야 한다.

③ “책뜨레”는 “구”의 승인 없이 시설물 및 물품의 구조변경, 교환, 기타 일체의 변경을 가해서는 아니된다. 단, 장비의 고장으로 수리를 요할 때는 “구”의 부담으로 한다.

제6조(협약기간) ① 이 협약의 유효기간은 2016년 6월 1일부터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.

② 협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별도 서면 통지가 없는 한 자동연장(1년 단위)되는 것으로 한다.

③ 협약기간은 “구”와 “책뜨레”가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협약 기간동안 (1년)의 운영 평가를 통해 연장여부를 결정한다.

제7조(협약의 중지 및 해지) 본 협약은 아래와 같은 상황 발생 시 협약 중지 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① “구”와 “책뜨레”가 심각한 민원의 발생 및 천연동 하늘샘 작은도서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여건 등의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중지할 수 있다.

② “구”와 “책뜨레”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지할 수 있다.

③ “책뜨레”가 천연동 하늘샘 작은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과 주민 다수의 편의에 부합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.

제8조(해석 및 변경 등)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도서관법 및 도서관법시행령을 적용하여 “구”와 “책뜨레”가 협의 결정하며, 협약내용에 관하여 “구”와 “책뜨레”

사이에 해석상 이의가 있거나 쌍방의 견해가 다를 때에는 “구”와 “책뜨레”가 협의하여 결정한다.

② 이 협약이 체결된 이후에 협약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“구”와 “책뜨레”의 협의에 의한다.

제8조(협약의 보존) 본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“구”와 “책뜨레”는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6월 1일

서대문구 연희로 248

서대문구청장 문석진(인)

서대문구 천연동 주민독서동아리

책뜨레 대표 김인희(인)